

##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피해보상지원확대촉구건의문 (제8회 임시회시 채택)

한전과 울진원자력발전소가 펼치고있는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울진원자력발전소 연접지역에 위치한 우리 삼척시 소재 원덕읍이 관련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 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단지 동일 시도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채,

매년 막대한 지원사업이 울진군에만 국한되게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있는 법집행을 촉구하고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 지원 확대 촉구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및 한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1-4호기 건설당시, 원전건설 소재지역과 불과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연접지역에 위치한 우리 삼척시 소재 원덕읍지역은, 원전이 가동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기간산업건설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원전건설을 묵과하였으며, 울진원전 1, 2호기건설 착공단계부터 지금까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우리시 원덕읍지역 가곡천끌재를 공급하는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울진원전 1,2호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고온폐수방출에 따른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연안양식업을 비롯하여,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 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발전소 주변 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우리시지역내 사회단체및 지역주민들의 누차에 걸친 제물 찾기 탄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전에, 한전은 울진원전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 및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하는 올바른 태도인지 먼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1993.12.10 원전주변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당시에는,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 가동중에 있었으며,

현재 3, 4호기가 준공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5, 6호기를 더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주민보호를 위한 유사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비상계획구역을 발전소 중심 반경 8~10km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원전주변지역 지원거리를 반경 5km이내로 규정한 것은, 원전기수와 8~10km지역의 비상계획 구역 지정 관리 정책과 배치되는 행정편의의 획일적인 규정이라고밖에 귀결지을수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리시 소재 원덕읍 가곡천골재가 투입되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1995.3.27 한전에서 삼척시장에게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여론 사항 협조요구의 건에 대한 회시내용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 삼척시소재 원덕읍이 발전소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전측도 인정을 하였으나, 이 문제는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라고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이 문제가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라 손치더라도, 현재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울진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시 원덕읍 주민들의 피해보상 지원요구사항을, 자기지역내의 현안처럼 전적으로 수용해 줄 수가 있겠으며,

그럼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련 법률도, 지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개정되는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운영 및 감독권한도 한전에서 떠나, 전적으로 해당 원자력발전소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한전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마땅히 바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전 스스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시소재 원덕읍이 발전소주변지역외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듯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와 한전이 책임을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내용에 건의된 바와같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반경 5km로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을, 원전기수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확대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법률에 의거 마땅히 우리 삼척시소재 원덕읍지역이 발전소주변 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동일시도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기에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쟁취라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정부 및 한전을 상대로 끝없이 투쟁할 것이며,

울진원자력발전소 5, 6기 건설시에는 10만 삼척시민 모두가 총연대하여, 원전건설 반대집회, 원전건설지역 방문 연좌시위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첨언드립니다.

1995. 10. 9

강원도삼척시의회 신상균의장외14인 의원일동

# 통상산업부

우 427-760 경기 과천 중앙 1번지 /전화02-500-2755~6 / 전송503-9603/ 담당 장동우

문서번호 원발 57330-232

시행일자 95. 10. 24.

경유

수신 삼척시의회 의장

참조

제목 건의문 회신

1. 삼척시의회 13130-195('95. 10. 10) 관련입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은 발전기로 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기초로 하여,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한 동일 행정구역(읍,면,동), 특별지원사업의 경우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시,군,구) 전체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법률은 1990.1.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한 검토용역과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 공청회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대상 구역의 조정문제를 포함하여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를 거쳐 금년 1월 5일자로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현시점에서 이를 개정할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귀의회에서 건의하신 대로 주변지역의 법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등 다시 법률을 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동법 시행령 제 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 관련성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여 한전사장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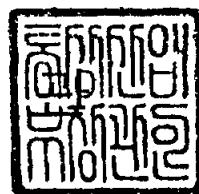
5. 다만, 골재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용 골재라 하더라도 타 용도의 골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골재 구입시 제비용이 포함된

우 427-760 경기 과천 중앙 1번지 /전화02-500-2755~6 / 전송503-9603/ 담당 장동우

적정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골재 체취지역이라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통 상 산 업 부 장

자원정책실장 전결





135-7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강남우체국 사서함 40호, TEL: 550-3114 FAX: 550-6399

발단발(역) 120.01 - 152.35

강원도 삼척시 교동 695

시행일자 : '95. 10. 23.

수신 : 삼척시의회 의장

발전처 지역지원부 (550-6822)

245 - 080

### 제 목 건의문에 대한 회신

1. 평소 저희 공사 전력사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삼척시의회 13130 - 195 ('95. 10. 10)로 저희 공사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대상지역 및 거리설정은 주민의식조사, 공개토론회, 발전소로 인한 영향 및 외국사례 등을 오랜기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대상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3. 따라서 원전가동기수에 따라 지원거리를 탄력성 있게 확대·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은 2 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법률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767-890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84-4, TELEX: K54430, FAX: 80-2214, 82-0429

율본(행봉) 220.01- 2265

시행일자 : 95.10.30.

홍보부 (80-2153)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의회

수신 : 삼척시의회 의장

참조 :

제 목 건의문에 대한 회신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척시 의회 13130-195 ('95.10.10) 관련입니다.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지원사업을 들려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변화와 지방화시대의 전전 등 제반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원법 개정에 착수, 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을 '94.12.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95.1.5일 자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4. 상기 개정된 지원법은 '95.7.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 의거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법개정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때 관련부서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



울진원자력본부

